

과목	회차-번호	수정 전	수정 후
보험업법	2회차-34번	<p>34. ③</p> <p>[해설]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<u>요구</u>할 수 있다.</p>	<p>34. ①, ③</p> <p>[해설] ① 금융감독원(x) 금융위원회(o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보험업법 제162조 참고</p> <p>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,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(이하 이 장에서 “관계자”라 한다)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.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p>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. 조사에 필요한 장부, 서류, 그 밖의 물건의 제출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/div> <p>③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.</p>
	3회차-22번	<p>22. 보험업법상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것으로 맞는 것은?</p>	<p>22. 보험업법상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?</p>
보험계약법	3회차-24번	<p>24. ④</p> <p>[해설]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고,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 한 후,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상법상의 의무이다.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제한 경우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발생한다.</p>	<p>24. ①, ④</p> <p>[해설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상법 제723조 참고</p> <p>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, 승인,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,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</p> </div> <p>④ 상법상의 의무이다.</p>